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99

발의연월일: 2022. 2. 8.

발 의 자:정청래·윤영덕·오영환

박성준 · 신정훈 · 이병훈

강득구・오영훈・이수진비

장경태 · 임오경 · 전용기

김남국 · 김승원 · 홍익표

양이원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재난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중인 국민은 참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 하루 3만여 명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참정권 제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 제40조, 제44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5호까지에"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로하고, "서면으로"를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른 거소·선상 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를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가(自家)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自家)치료 또는 격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구·시·군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제40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 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로, "선거인명부를"을 "선거인명부 및 거 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인명부를" 을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당일부 터 2일간

제40조제2항 본문 중 "선거인명부"를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는 선거일 당일에 확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	
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 제4항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u>제5호까지 및</u>
<u>에</u>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	제5호의2에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	
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u>서면으로</u>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	<u>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u>
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	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	<u>를 통하여</u>
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	
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u><신 설></u>	
	다만,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른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까
	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2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 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 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 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 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 다.

1. · 2. (생략)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u>서면[승선하고 있는 선</u>
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
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u>포함한다]이나 구·시·군이 개</u>
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u>를 통하여</u>
1.•2. (현행과 같음)
③

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 · --- 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 --- 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 ---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 --- 약 한다. 이 경우 구 · 시 · 군의 약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하는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 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 소명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선기 가소투표신고서를 발 송하여야 한다. <신 설> ---

받아
야 하며, 제4항제5호의2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자가(自家)에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은 자
가(自家)치료 또는 격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u> </u>
다만, 제38조제4항제5호의2에
<u>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구·시·</u>
군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
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르 바소款성하 하다

- 1. ~ 3.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략)

⑤ ~ ⑧ (생 략)

제40조(명부열람) ① 구·시·군 저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 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

<u> </u>
1. ~ 3. (현행과 같음)
4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따라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가(自
家)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
람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에40조(명부열람) ①
<u>다음 각 호의 기간에</u>
선거인명부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
서
그 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
고인명부를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u>선거</u> 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 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 한다.

③ (생략)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저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신 설>

1.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
일간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당일부터 2일간
①선거
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
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41조부
터 제43조까지에서 같다)
③ (현행과 같음)
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
<u>다만, 제38조제4항제5호의2</u>
<u>에 해당하는 사람의 거소·선상</u>
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당일

에 확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